



COVID-19 산업별 지침: 건설산업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공중 보건 담당관인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 (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한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 감염자 수와 감염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 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원 및 일반 고객/손님의 안면 가리개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본 문서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지침은 법령이나 규제, 단체 교섭을 비롯하여 직원의 권리 일체를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포괄적이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al/OSHA)의 규정과 같은 일체의 기존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COVID-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공 보건 지침 및 주/지역 명령 변경 사항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Cal/OSHA는 동 기관의 [COVID-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Cal/OSHA 지침](#)에서 더 많은 안전 및 건강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반인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일반인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이 방문했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되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직원 개인의 가정이나 거주지는 제외)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승객이 없을 때도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의 편의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 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 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사업체는 [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의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을 인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는 고객과 손님, 방문자, 직원 중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장소에서 문서화된 업무 공간별 특정 COVID-19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 영역 및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각 시설에서 해당 계획을 구현할 담당 직원을 지정합니다.
- [CDPH 안전 가리개 관련 지침](#)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 중에 COVID-19 감염자가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보건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명시합니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각 시설에 대해 계획 준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확인된 결함을 문서화하고 수정합니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및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되기 쉬운 개인의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증상 발현, 인후통, 코 막힘이나 콧물, 구역질,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CDC가 언급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매 근무 교대 후에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로 인한 병가 및 산재 보상금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및 캘리포니아 주지사 [행정 명령 N-51-20](#) 행정 명령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 본 명령이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 보상 혜택 및 COVID-19와 업무간 관련성에 대한 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별 통제 조치 및 선별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 및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판매업체나 계약업체, 다른 사람에 대한 체온 점검 또는 증상 선별 검사 제공.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직원이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 직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 현장 출입은 경영진에 의해 필수로 분류된 사람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출입하기 전에 체온/증상 선별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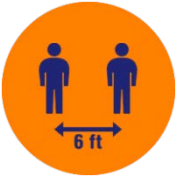


청소 및 소독 절차

- 휴게실 및 점심 식사 공간, 탈의실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과 계단, 계단 통로, 에스컬레이터,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을 비롯한 출입 구역을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문 손잡이 및 화장실, 손 세정 시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하십시오.
- 모든 차량 운전실의 표면을 포함하여 작업 표면, 도구, 손잡이 및 걸쇠, 고정식 및 이동식 장비의 제어 장치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고 근무 교대 중 또는 사용자 간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 직원이 워크 스테이션, 도구, 라디오, 시간 기록계, 이동 카트 및 기타 품목과 같은 공용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손을 씻고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유급 근로 시간을 허용합니다.
- 안전모 및 안면 보호구와 같은 고용주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장비는 교대 작업이 끝날 때마다 소독하도록 하십시오. 장비의 내부와 외부를 청소 및 소독한 다음 손을 씻으십시오.
- 자신의 안전모를 소유한 직원에게 동일한 청소 지침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적절한 청소 및 위생 제품을 제공하십시오. 이러한 청소를 끝낼 수 있도록 유급 근로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 가능하면 전화, 사무 용품, 기타 업무 도구 또는 휴대용 이동 통신 장비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배정된 주변 장비(키보드, 핸드 세트, 헤드셋, 의자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들 장비를 사용 전후에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PPE는 절대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 직원들이 근무 교대 중 청소하는 방침을 실행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 직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 중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위생 시설은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누,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정된 휴식 시간 동안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생 시설(간이 화장실 및 손 세정대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동작 감지 싱크대, 비누 디스펜서, 소독제 디스펜서 및 종이 타월 디스펜서를 비롯한 핸드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재향군인병\(Legionnaires' disease\)](#)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용수 시스템과 기능을 장기간 시설을 폐쇄한 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 시, 고용주는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승인](#) 목록에 수록되었으며 COVID-19에 대해 사용하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가 권장한 [천식 환자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을 따르고 적절히 환기를 합니다.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 건물 또는 건설 트레일러의 공기 필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업무 및 휴식 공간에 외부 공기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 사항의 적용을 고려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직원 간에 최소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가림막 또는 시각적 표시 사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 직원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또는 표지판). 직원 간의 거리를 늘리기 위해 개인별 대기 지역을 재지정합니다. 별도의 입구 및 출구를 지정하고 이런 내용의 간판을 부착합니다.
-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회의를 조정하고 대신 직장에서 소규모의 개인별 안전 회의를 열어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합니다. 기타 회의 및 면담을 전화 또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자 간에 최소 6 피트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외부 또는 공간에서 회의를 엽니다.
- 고객 또는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직무를 요청하는 직원에게 다른 직무 옵션(예: 대신 재고관리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원격 근무로 관리하도록 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 관행을 활용하여 같은 시간대에 업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하십시오. 여기에는 업무 일정 조정(예: 교대 시작/종료 시간에 시차를 두기), 업무 교대 중 지정된 지역의 직원 접근을 교대로 허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업무 공간을 시차를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간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6 피트 거리를 두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폐쇄된 지역에서는 직원 수에 추가 제한을 두십시오.
-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에 시차를 두어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합니다.
- 휴식 시간 중에 직원들을 분리시키거나 직원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휴게실을 단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가능하면 그늘 덮개와 좌석이 있는 외부 휴식 지역을 만들어 물리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 직원은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은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점심을 집에서 싸오거나

포장 음식을 주문 또는 배달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정 통제, 행정 통제 및 PPE 등 생산 및 기타 영역에서 COVID-19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체계를 사용하십시오.
 - 공정 통제에는 플렉시 유리 또는 기타 견고하고 비침투성의 칸막이와 같은 물리적 또는 공간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장벽을 설치하여 근로자 간의 분리 공간을 만드십시오.
 - 행정 통제에는 안전 요건 범위 내에서, 업무의 속도를 늦추고 교대 횟수를 늘리며,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PPE에는 안면 보호구, 일부 유형의 마스크 및 불침투성 장갑이 포함됩니다. 인공 호흡기와 같은 일부 일회용 장비는 병원체를 다루는 의료 종사자 및 근로자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 시설에 대한 공급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탄성 중합체 (elastomeric) 호흡기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¹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 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